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4일, 이달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달희의원)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지방세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내용임.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은 각각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국민운동단체로,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운동사업 등을, 한국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국민

운동 전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은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공익적 성격이 있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일몰기한 연장에 있어서는 타 비영리기관과의 형평성, 특례의 실효성, 행정안전부가 개별 사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조직·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는 점, 지방재정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